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80
----------	------

2022년 3월 3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7월 13일, 서윤기 의원(찬성자 42명)
- 나. 회부일자 : 2020년 7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0년 3월 31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윤기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과태료의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함(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1)에 따라 실시된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결과에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 제시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 현행 과태료 규정이 행정청의 부과·징수 권한만 명기하고 있을 뿐 이해당사자의 법적 이의제기 권한은 명기하고 있지 않아 자칫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조례 제2조)

■ 서울시 인권영향 평가 추진 현황

- 서울시는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과 2017년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는 등 인권을 시정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인권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2018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통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해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9년 서울시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2019년 7월 1일 기준 860개)를 실시하였으며,

[표 1]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서울시 인권위원회)

평가분야	평가항목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1) 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5) 반환권 제약(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 미비)
	6) 구제권 제약(과태료 부과 징수 법적 근거, 구제절차)
시민참여 보장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 그 결과, 2020.4.2.일 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 62개 자치법규의 96개 해당조항을 선정하여 개정을 권고하였음.([붙임2] 참조)

※ 서울시 인권위원회 업무(인권조례 제14조)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6. 제17조제2항(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명문화 관련 의견(안 제8조제4항)

- 안 제8조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²⁾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에서,
- 과태료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의신청’도 함께 명기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표 2]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이의신청 ----- -----.

- 이는 과태료 벌칙에 대한 행정청의 부과·징수 권한과 이해당사자의 법적 이의신청 권한을 병기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시민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2)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과태료) 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2.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4.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 다만, 본 개정안이 사용하고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법적 용어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대항 권한으로 ‘이의제기³⁾’와 ‘이의신청⁴⁾’을 규정하고 있음.
-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5조(이의신청)에서는 당사자와 검사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본 개정안의 취지상 ‘이의신청’이 아닌 ‘이의제기’가 적합한 용어로 사료되는 바, 개정안의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이의신청) 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표 3] 안 제8조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과태료의 <u>부과 및 징수</u>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부과 및 징수, 그리고 이의신청</u> ----- ----- .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u>부과·징수 및 이의제기</u> ----- ----- .

[붙임] 1.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방법 및 결과

2.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및 목록

[붙임] 1.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방법 및 결과

붙임 1-1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방법 및 결과

- 법제처,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타 지자체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의 검토·협의를 통하여 결과 도출
 -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분과위원, 변호사 등 참여
- 차별 및 인권침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 시민참여보장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
 - 평가결과 총 96개 조항(조례 57개, 규칙 5개)의 보완을 통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I 차별 및 인권침해	II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III 시민참여보장
개선점	인권친화적 행정기반 구축	문화권,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참여(참정)권, 평등권
인권 침해 (제한) 분야	1.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조항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상위법에 근거한 시설 이용 감면(면제)의 올바른 적용여부) 5. 반환권 제약 (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이 미비한 경우) 6. 구제권 제약(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여부 및 구제절차 포함 여부)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 위 7, 8, 9번은 관련된 시 기본 조례가 있어 권고에서 제외 (9번 예외, 자치법규 개정 권고내용 7번 참조)

- 7.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 8.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 9.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붙임] 2.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및 목록

붙임 1-2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및 목록

자치법규 개정 권고내용

연번	인권영향평가				권고사유	
	평가항목	현재용어	대안용어	조항		
총 계				96		
1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9개 용어)	계		50		
		행상/노점상	→	거리가게	5	‘거리가게’는 ‘행상/노점상’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 순화어임(2013)
		미혼	→	비혼	1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 필요
		부모	→	보호자	1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
		소외계층·우범지역	→	취약계층·취약지역	14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
		저출산	→	저출생	11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
		유모차	→	유아차	4	유모차는 ‘어미 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 ‘유아’ 중심으로 표현
		자매결연	→	상호결연 (sister city)	12	성차별적 용어이며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 한국법제연구원(2015)에서 규정한 차별적 용어
		장애등급	→	장애정도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장애인복지법>
		결손가정·결손가족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1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 서울시 행정순화어임(2019)
2	편견·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	계		5		
		학생	→	청소년/시민	3	학생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 사용
		주부	→	여성	1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고용중단 여성을 ‘주부’로 특정할 우려가 있고 실제 여성인턴십 사업으로 운영중
		특정계층 지칭	1	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함으로써 차별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 주부, 학생 등 → 고용계약이 없는 자		
3	입장 및 이용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8	시설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미련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함. 이에 해당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해 관람(이용)료 면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	
5	반환권 제약			8	시민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관람권(이용권) 반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반환권 권리보장	
6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			20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조항)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	
7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1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신상의 장애」 문구 삭제 필요	

자치법규 개정 권고목록

	서울특별시 조례명	조 항	권고내용	부 서
1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행위의 제한)	노점상 → 거리가게	공원녹지정책과
2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관리계획)		문화정책과
3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관리계획의 평가)		문화정책과
4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문화정책과
5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6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	제9조(가족동반)	미혼 → 비혼	국제교류담당관
7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원칙)	부모→ 보호자	가족담당관
8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6조(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소외계층 → 취약계층	경제정책과
9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문화환경취약지역 우선 지원)		문화정책과
10	자치현장 조례	제8조(정보격차 해소)		법무담당관
11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복지정책과
12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시장의 책무)		복지정책과
13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14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체육정책과
15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체육정책과
16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제4조(책무)		체육정책과
17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평생교육 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생교육과
18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과
19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사업)		평생교육과
20	에너지 조례	제8조(에너지계획)		녹색에너지과
21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범죄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사업)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조례명	조항	권고내용	부서
22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저출산 → 저출생	가족담당관
23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중장기 기본 계획)		가족담당관
24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가족담당관
25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기업·민간 단체 등의 지원)		가족담당관
26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교육 및 홍보)		가족담당관
27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포상)		가족담당관
28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5146호 제2조 (시행계획에관한경과조치)		가족담당관
29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가족담당관
30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3조(적용범위)		디자인정책과
31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		여성정책담당관
32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여성정책담당관	
3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시판매 시설 등의 설치운영)	유모차 → 유아차	경제정책과
34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행위의 제한)		공원녹지정책과
35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 이용료 신고 등)		공원녹지정책과
36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보행정책과
37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자매결연 등)	자매결연 → 상호결연 (sister city)	국제교류담당관
38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국제교류담당관
39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자매결연 의결)		국제교류담당관
40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국제교류담당관
41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국제교류담당관
42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결연의 취소)		국제교류담당관
43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도시의 날 운영)		국제교류담당관

	서울특별시 조례명	조 항	권고내용	부 서
44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	자매결연 → 상호결연 (sister city)	국제교류담당관
45	시의회의원 공무국의활동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기획담당관
46	시의회의원 공무국의활동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예산 편성·집행)		기획담당관
4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9조(구매 협조요청)		장애인복지정책과
48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등)		지역돌봄복지과
4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재해보상)	장애등급 → 장애정도	재난대응과
5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10조(기본원칙)	결손가정 → 소년소녀가정 등	주택정책과
51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2조(표창)	학생 → 청소년	어르신복지과
52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10조(청소년회의 개최)		청소년정책과
5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정보격차 해소)		자전거정책과
54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2조(정의)	주부 → 여성	여성정책담당관
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정의)	주부, 학생, 직장인 → 고용계약이 없는 자	택시물류과
56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람의 금지)	입장 및 이용 제한에 따른 문화권 제약 술에 취한 자 등 →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시립미술관
57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람의 제한)		경제정책과
58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도시공간개선단
59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제6조(이용의 금지)		시민소통담당관
60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의 금지 및 제한)		보육담당관
61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사용제한)		교육정책과
62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람의 제한)		박물관과
63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이용대상자)		안전지원과
64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이용료)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65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무료관람)	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 조례명	조항	권고내용	부서
66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이용료의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및 그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평생교육과
67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람료 감면)		경제정책과
68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반환권 제약 입장료를 납부한 자가 그 이용을 취소 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한다 (신설)	청년청
69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관람료)		시립미술관
70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이용료)		도시공간개선단
71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8조(재해보상)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72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기본원칙)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73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표창)		경제정책과
74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청소년회의 개최)		보육담당관
75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정보격차 해소)		박물관과
76	도시공원 조례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 부과·징수 절차는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77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과태료)	건설혁신과	
78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4조(과태료)	주택정책과	
79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과태료)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80	화재예방 조례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81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	기후대기과	
82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	자연생태과	
83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주차계획과	
84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과태료)	자원순환과	
85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과태료 부과·징수)	물재생계획과	
86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1조(위반차량 과태료)	교통정책과	
87	도시계획 조례	제6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조례명	조 항	권고내용	부 서
88	문화재 보호 조례	제6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비로 인한 구체권 제약 부과·징수 절차는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역사문화재과
89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과태료)		문화정책과
90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4조(과태료)		환경정책과
91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차량공해저감과
92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		건강증진과
93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0조(과태료)		건강증진과
94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제11조(과태료)		보행정책과
95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보행정책과
9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정신상의 장애' 문구 삭제	주택정책과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이의신청)에 따르면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는 약식재판에 대한 대항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와 부합한 ‘이의제기’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80
----------	------------

제안일자 : 2022년 3월 31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대항 권한으로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은 약식재판에 대한 대항권이며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한 용어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함. (안 제8조제4항)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4항 중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이의신청”을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8조(과태료) ① ~ ③ (생략)</p> <p>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과태료의 <u>부과 및 징수</u>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을 따른다.</p>	<p>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부과 및 징수, 그리고 이의신청</u> ----- -----.</p>	<p>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p> <p>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 ----- <u>부과·징 수 및 이의제기</u> ----- ----- -----.</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을 “과태료”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과 및 징수”를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